

IT제품 개발업체를 위한

#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신청 가이드

‘보안기능 확인서’란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한 IT제품에 대해 공인시험시험기관이 발급하는 증서입니다. 2021년부터 호스트·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제품, 2022년부터 망간자료전송제품의 공공조달시 요구됩니다.

신청  
이전



신청  
준비



시험  
신청

## 공공분야 납품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합니다.

- 국가계약법·전파법 등 관련 법규 준수사항 확인
- 신청제품에 대한 정당한 법적 권한 소유 여부 점검
-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
- 공공조달에 필요한 사전 인증(CC인증 등) 여부 확인

## 제품이 보안기준을 만족하는지 점검합니다.

- 시험기관의 자문을 받아 제품의 보안기능을 점검하고 제출문서를 작성
- '국가용 보안요구사항'과 제품의 보안기능을 비교하여 미흡한 기능을 보완
- 제품의 취약점 존재여부를 확인, 보완내역을 기록
- 사전점검을 철저히 할수록 소요기간이 단축

## 공인시험기관에 보안기능 시험을 신청합니다.

- 신청 서류·제출물에 허위·과장 기재 여부 확인
- 공인시험기관에 보안기능 시험을 신청하고 제출문서를 제출
- 필요시 제품시험에 필요한 시험환경 구축을 지원
- 시험중 발견된 취약점 등을 신속히 보완

### ※시험기관 연락처

한국정보보안기술원 koist@koist.kr / 한국시스템보증 info@kosyas.com / 한국아이티평가원 bgkak@ksel.co.k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security@krc.re.kr / 한국전자통신연구원 wideideal@etri.re.kr /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(정보보호시스템:sc\_info@tta.or.kr, 네트워크 장비:networker@tta.or.kr) / 한국산업기술시험원 yhd@ktil.re.kr

# 신청 이전 단계

공공분야 납품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확인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.

## 공공분야 납품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합니다.



신청업체는 제품의 유형과 기능에 따라 **국내 판매(수입)를 위해 관련 법규(전자법 등)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**해야 하며, 제품 및 제출문서에 대한 정당한 법적 권한을 소유해야 합니다.

국내 판매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법규를 지키지 않고 발급된 보안기능 확인서는 **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될 시 취소**될 수 있습니다.

##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.



보안적합성 검증이 필요한 제품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및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라 **국가·공공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해 도입되는 제품**(정보 보호시스템 등)입니다. 보안기능 확인서는 **검증 대상 제품(CC인증 필수 유형 포함)에 한해** 발급이 가능합니다.

## 공공조달시 보안기능 확인서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.



2021년부터 **호스트·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제품**이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 제품으로 추가되며 2022년부터 **망간자료전송제품**도 보안기능 확인서가 필요합니다. 해외 CC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, 필수는 아니지만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**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생략**할 수 있습니다.

# 신청 준비 단계

국가·공공기관 납품 이전에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제거하며, 제출문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.

## 국가기관 납품시 요구되는 보안기준의 만족여부를 확인합니다.



보안기능 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업체는 공인시험기관의 자문을 받아 제품에 해당하는 **국가용 보안요구사항과 제품의 보안기능을 비교**, 분석하여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를 점검하고 제품에 활용된 오픈소스 등의 구성요소에 **잠재된 취약점을 미리 제거**하는 등 보안성을 제고합니다. 신청제품은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에서 '필수'로 정의된 항목을 만족해야 합니다. 제품의 **사전점검을 철저히 할수록 시험기간이 단축**됩니다.

## 제품이 보유한 인증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.



CC인증 등 사전인증이 필수인 제품은 **인증받은 제품과 동일한 형상**에 대해서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 V1.0.0 으로 CC인증을 받았다면 V1.0.0만이 발급 가능하며 Update 버전 등 **인증 형상이 아닌 경우, 신청이 불가**합니다. 또한, CC인증 제품에 대해 부여되는 보안기능 확인서 유효기간은 인증서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
## 신청서류 및 제출문서 등 제출물을 준비합니다.



신청업체는 시험기관의 자문을 받아 「보안기능 시험 신청서」 등 신청서류 및 제품의 보안기능 시험에 필요한 **「보안기능 운용설명서」 등 4종의 기술문서**를 작성합니다.

시험기관이 **제출물을 토대로 제품을 이해하고 시험**하기 때문에, 제출물의 **충실한 작성은 시험진행에 많은 도움**이 됩니다. 제출물의 완성도가 떨어질 경우 시험이 착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# 시험 신청 단계

시험기관은 업체로부터 신청서 등 제출문서와 제품을 접수받아 보안기능 시험에 착수합니다. 보안기능 시험은 '국가용 보안요구사항'을 기준으로 실시되며 약 13주~15주간 소요됩니다.

## 작성된 제출문서를 점검합니다.



신청업체는 보안기능 시험 신청을 위해 **작성된 제출문서와 제품을 점검**합니다. 제출문서는 내용중 허위·과장·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시험기관에 제공될 제품은 **제출문서에 기재된 내용(예: 버전)과 맞는지 확인**합니다. 제출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형상의 제품은 제출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## 공인시험기관에 보안기능 시험을 신청합니다.



신청업체는 공인시험기관에 보안기능 시험을 신청합니다. **관련 업무 담당자의 개인 명의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**합니다. 시험기관은 제출물의 사전검토가 완료되면 기술심의회의를 검토를 거쳐 시험에 착수합니다. 신청업체는 **시험기관의 요청시 시험에 필요한 환경구축을 지원**해야 하며, **시험중 발견된 취약점 등을 신속하게 보완**해야 합니다.

## 보안기능 시험의 '신청'이 발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


보안기능 시험 '**신청**' 또는 '**시험 진행중**'이라고 하여도 **보안기능 확인서 '발급 확정' 또는 '문제 없음'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** 발급된 보안기능 확인서를 제외한 시험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문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와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**국가정보원장의 보안 적합성 검증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**

〈 별지 1 〉

## 〈 IT보안제품의 국가·공공기관 도입 요건 〉

| 제품 유형             | 해당 항목 준수 필요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| 보안기능 확인서    | CC인증        | 성능평가 | 검증필 암호모듈 |
| 스마트카드             |             | ○ (EAL4 이상) |      |          |
| 디지털 복합기        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침입차단시스템        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침입방지시스템        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통합보안관리제품       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웹 방화벽          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운영체제(서버) 접근통제제품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DB접근통제제품       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네트워크 접근통제제품    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인터넷전화 보안제품     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무선 침입방지제품      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무선랜 인증제품       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가상화제품(Hypervisor)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스마트폰 보안관리제품    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스팸메일차단시스템      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패치관리시스템        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망간자료전송제품       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DDoS 대응장비      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
| 안티바이러스제품       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
|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
| 가상사설망제품        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| ○        |
| S/W 기반 보안USB제품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| ○        |
| 호스트 자료유출방지제품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| ○        |
|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제품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가상화관리제품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네트워크 장비(SDN 포함)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
※ 이 표에 기재된 제품은 검증 대상 제품 전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
※ 망간자료전송제품은 2022년부터 CC인증 필수 대상에서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 대상으로 변경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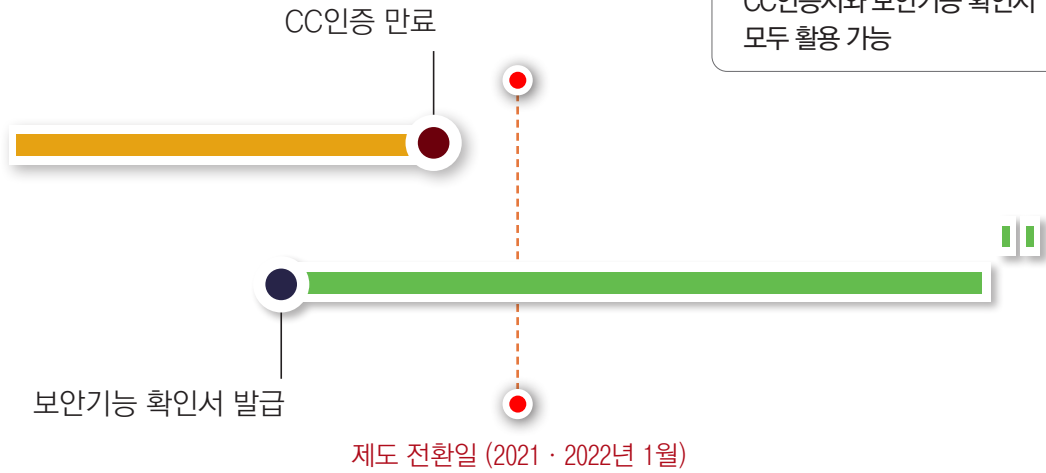
## < 보안기능 확인서 관련 주요 공지 >

1. 자료유출방지·망간자료전송제품에 대한 시험 착수 가능 기간(2020.5. 공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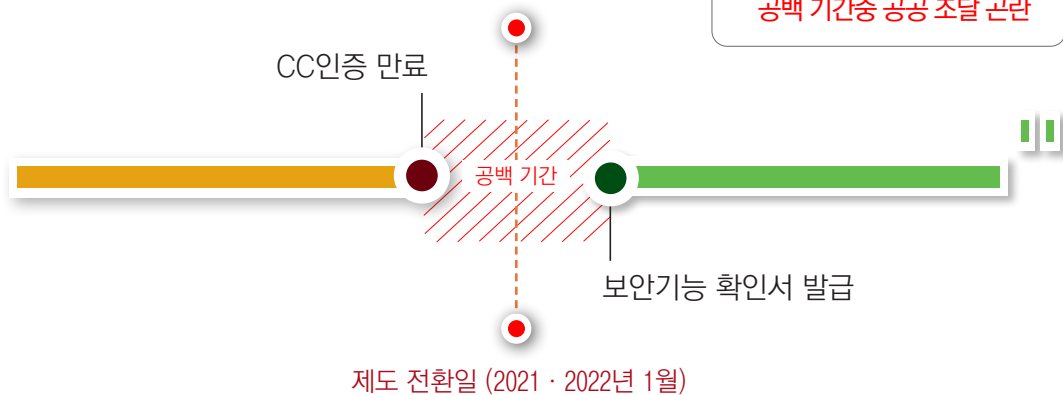
- 제도 전환일 이전(以前)이라도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'검증필 제품 목록'에 등재되어 공공조달이 가능.

### < 도입 요건 인정 예시 >

사례 1. CC인증 만료 이전 발급



사례 2. CC인증 만료 이후 발급



## 2. 보안기능 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안내(2020.12. 공지)

-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한 경우 최대 3년(2년+연장 1년)을 부여하였으나 **2021년 1월 1일부터** 신규로 발급되는 ‘보안기능 확인서’에 대해 **5년의 효력**을 부여.(효력연장 절차는 **폐지**)
- **2021년 1월 1일** 현재, 유효한 ‘보안기능 확인서’에 대해 **발급일로부터 5년**까지 효력을 **연장**.
- ※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의 필수 항목을 만족하여 발급된 '보안기능 확인서'를 의미.

예시)

